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제재처분기간 중인 경우 폐업신고 금지 등 >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26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제2213126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폐업신고 금지(안 제45조제9항 신설 등)	3
2. 자동차정비업자의 보험사기 행위시 제재처분 강화(안 제66조제1항 제13호카목 신설 등)	9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26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9.

3. 회 부 일 : 2025. 9.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등”)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및 절차의 중단 등으로 인해 행정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폐업신고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허위로 정비견적서·명세서 등을 작성·발급하는 경우 사업등록을 정지·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정비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 저감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9항, 제51조의3제9항 및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폐업신고 금지(안 제45조제9항 신설 등)

개정안은 지정정비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⑧ (생략) <u><신설></u>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51조의3제9항에서 같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9항까지를----- -----.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⑧ (생략)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제8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5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	---

가.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¹⁾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²⁾로 지정할 수 있고, 일정한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³⁾로 지정할 수 있음.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등”이라 함)로 지정받게 되면 단순 정비 업무 뿐만

1)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니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고객 유치에 유리하고 검사 수수료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정비사업자등이 부실검사 등의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⁴⁾,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지정정비사업자등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⁵⁾하고 있어 장기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게 됨.

4)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 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9.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이하 생략)

제51조의4제1항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④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⑤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지정정비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⁶⁾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업신고는 이미 발생한 폐업이라는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는 것으로 신고 자체가 폐업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처분 절차 중에 있더라도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처분 절차가 중단되고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지정취소 처분으로 5년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정정비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지정정비사업자등이 행정제재처분을 피하기 위한 폐업신고를 차단함으로써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둘째, 부실·불법 검사를 한 사업자가 합당한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⑧ 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유사 입법례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⁷⁾에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⁸⁾에서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행위는 검사제도 유지·발전을 위해

7) 제37조(영업허가 등)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8)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③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정정비사업자의 자율적 영업권을 제한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가 있음.

2. 자동차정비업자의 보험사기 행위시 제재처분 강화(안 제66조제1항제 13호카목 신설 등)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정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정비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 ----- ----- ----- ----- ----- ----- -----제13호카목, 제15호-----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 바. (생략)	13.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 -----경우(카목

아. ~ 차. (생략) <u><신설></u> 14. ~ 16. (생략) ②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u><신설></u>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u>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아. ~ 차. (현행과 같음) 카.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4.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3 호카목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 죄경력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 지와 같음)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 서에 해당하는 사유(같은 항 제16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등 록을 취소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유 및 내용 등을 공 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부 터 제7항까지에----- ----- -----. 제75조(청문) -----
---	--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7. (생략)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66조제6항에 ----- ---- 7. (현행과 같음)
--	---

가. 검토의견

자동차정비업은 현행법 제2조⁹⁾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¹⁰⁾

현행법 제57조제1항제3호¹¹⁾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58조제5항¹²⁾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거짓으로 점검·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10)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11)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2)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제66조¹³⁾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는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정한 금품의 수수 등 부정한 행위시 1차시 30일 정지, 2차시 90일 정지, 3차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 >

구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사업자)
6.자동차관리사업자 가. 공통사항	7)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3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다.자동차정비업자	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3호사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3)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58조제5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자동차 정비업계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36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하여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도 있으나,¹⁴⁾ 현행 행정처분기준에 따를 경우 3회 이상의 부정 한 금품 수수 등의 위반행위가 있어야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또한 이와 관련된 유사 입법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¹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¹⁶⁾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14)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10.11자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9.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또는 면허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으로, 김용만의원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2206826)은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비업체의 보험사기로 제재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서범수의원안은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정비업체의 보험사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서범수의원안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정비 사기 범죄 뿐만 아니라, 주차 차량 뺑소니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 등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정비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보임.

김용만의원안	서범수의원안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한편, 자동차정비업자의 보험사기 관련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여부를

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이 해당 정비업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험사기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 규정의 신설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유사 입법례로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의2¹⁷⁾ 및 「방위사업법」 제6조의2¹⁸⁾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과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고의 방법과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7)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8) 「방위사업법」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군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찰·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2.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취소

3.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 입법례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19)에 따른 측량업등록 취소 시 공고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20)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취소 시 공고를 규정하고 있음.

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현행 부정한 금품 수수 등 위반행위 횟수가 3차일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나,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정비업자도 등록 취소토록 규정할 필요 있음.

자동차정비업과 관련하여 보험사기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의 확정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필요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4호·제7호·제8호·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유 및 내용을 공고하도록 할 필요 있음.

2)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업 등록까지 취소하는 것은 영세한 정비업자가 이중 처벌되는 가혹한 규정이며, 폐업으로 인해 정비업계 10만 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문제 발생

문 의 처
02)6788-5582